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박찬원)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주민생활지원과장)	일 자	질의	2016년 11월 28일
			답변	2016년 11월 29일
회 의	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(1)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			
질문요지				
○ 평창군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근무인력 급여기준				
답변내용				
○ 시설개요				
구 분	위 치	연면적(m ²)	배치인력	개관일
평 창 청소년문화의집	평창읍 평창중앙로 67	824.38	청소년지도사 1	2010.06.01
진 부 청소년문화의집	진부면 석두산 2길 7	670.77	청소년지도사1 사회복지사 1 청사관리 1	2013.12.06
* 평창 : 청소년지도사 1급(무기계약직) 진부 : 청소년지도사 2급(기간제), 사회복지사(기간제), 청사관리(기간제)				
○ 급여기준				
- 지원근거 : 청소년사업안내, 근로기준법				
구 분	급여기준	'16년 10월 급여액(천원)	비 고	
청소년지도사 (무기계약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급 월 1급 1,820천원 • 급식비 월 50천원 • 명절휴가비 300천원(연 2회) • 연차유급휴가수당 1,820천원×0.86/30일×12일(연간) 	1,870	주5일 근무/ 4대보험 제외 전 급여액	
청소년지도사 (기간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급 월 2급 1,720천원 	1,720		
사회복지사 청사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급 일 49천원 • 주휴수당 49천원×52일(연간) 	1,274 (22일/주휴4) 1,225 (21일/주휴4)		
* '17년 기본급 인상(안) : 청소년지도사(월) 1급 1,880천원/ 2급 1,780천원 기간제근로자(일) 52,000원				